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기간 연장 등 안내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16개 시·군을 비롯하여 개편안 시범적용 중인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백신 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7.1.부터**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인원 제한 있는 다중이용시설>

- 예방접종 완료자*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수 산정)에서 제외
-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수 산정)에서 제외

<종교시설>

- 예방접종 완료자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3.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특정지역에 먼저 적용함으로써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행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역수칙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장기간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한편,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내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안 1단계보다 강화된 조치**(예: 모임인원 기준 강화, 관광지 및 도시 인접지역 및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고령층에 대한 감염예방 대책 등) 내지 **단계상향*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계 상향 시 방역강화 조치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단계별 조치 기준에 의할 것

○ 적용 기간 : 2021년 6.14.(0시) ~ 2021년 7.4.(24시)까지

○ 적용 지역 / 적용 단계

- 전라남도 전 지역/개편안 1단계

- 경상북도 16개 시·군*/개편안 1단계

* 14개 시·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상남도 10개 군**/개편안 1단계

* 10개 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4.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업종별 협·단체

주무관

박혜수

과장

전결 2021. 6. 15.

김재준

협조자

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700 (2021. 6. 15.)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222 팩스번호 044-203-4722 / oyeah5@motie.go.kr / 대국민 공개